3. 한국거래소 규정
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시가총액 중심의 경영성과 요건의 심사기준 구체화 등)
나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관리종목 지정 · 해제시기의 변경)
다.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경매매 신청요건 완화)
라.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(겸영금융투자업자인 채무증권전문회원의 채권시장 매매거래 참가 범위)

3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0/8/25 개정 · 2020/9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형식적 심사요건 중 수익성 기준을 세전 이익으로 일원화(2019.6.26 규정 개정)한 것과 관련하여 관련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이익액의 정의 명확화(별표 2의2 제2호 가목 1) 가) (1))

— 이익액의 질적심사는 2019년 6월 26일 규정 개정 전과 같이 영업이익,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및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순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명시적으로 규정

□ 시가총액 중심의 경영성과 요건의 심사기준 구체화(별표 2의2 제2호 가목 1) 가) (6))

— 사업계획상 성장전략 및 실현 가능성 여부, 자금사용 계획의 적정성, 미래 경영성과 개선 가능성 등 성장형기업의 미래성장성 심사기준을 마련

나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0/8/25 개정 · 2020/10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저유동성 우선주의 이상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종류주식 진입 · 퇴출기준 정비에 따라 관련 세칙 사항 등을 개정하기 위함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2) 주요 내용

□ 종류주식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(제33조의6)

— 상장주식수 및 시가총액 관련 퇴출기준 상향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· 해제시기 변경

- 상장주식수 미달로 인한 종류주식의 관리종목 해제시기: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의 상장주식수가 (기존) 5만주 → (개정) 20만주 이상인 것이 확인된 날의 익일
- 시가총액 미달로 인한 종류주식의 관리종목 해제시기: 시가총액이 (기존) 5억원 → (개정) 20억원 이상인일 일수가 10일 이상 계속된 날의 익일, 시가총액이 (기존) 5억원 → (개정) 2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인 날의 익일

다.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0/8/5 개정 · 2020/9/7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경매매제도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청요건 등을 완화하고, 「벤처투자법」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경매매 수량요건 등 경매매 신청요건 완화(제35조)

— 경매매를 위한 최소 신청 수량요건을 발행주식총수의 (기존) 2% 이상 → (개정) 1% 이상 및 (기존) 1억원 → (개정) 5천만원(기준가격×신청수량) 이상으로 완화

— 경매매 신청기간을 (기존) 직전 매매거래일의 장종료후부터 16시 30분까지 → (개정) 3매매거래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장종료후부터 17시 30분까지로 확대

- 3매매거래일 전일에 경매매신청, 직전 매매거래일에는 신청요건 확정

라.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(2020/8/3 개정 · 2020/8/7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겸영금융투자업자인 채무증권전문회원의 채권시장 매매거래 참가범위 및 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회원관리 및 시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겸영금융투자업자인 채무증권전문회원 등의 거래참가범위(제8조 제1호)

— 겸영금융투자업자인 채무증권전문회원 등이 거래할 수 있는 채무증권의 최대 범위를 일반 채무증권전문회원과 같이 모든 채무증권으로 확대

— 겸영금융투자업자도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인가범위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와 같이 채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, 금융투자업자인 채무증권전문회원과 참가시장 범위의 형평성을 도모

— 세부 거래참가 범위는 금융위원회의 인가조건 및 관련 영업활동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